##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063

발의연월일: 2022. 6. 20.

발 의 자: 박광온 · 권칠승 · 김영배

민병덕 • 윤영찬 • 이병훈

이장섭 • 전용기 • 전혜숙

홍성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은 그 전범에 대한 처벌보다 가중된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가중처벌 조항이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후범을 가중처벌하며,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재범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어 책 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음[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31, 2022헌가9(병합), 2021헌가32, 2022헌가35 (병합)].

이에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전범의 음주운전 전력 및 전범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적 제한을 규정하여 가중처벌의 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전범의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알코올 중독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미이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한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재범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제82조제4항, 제16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및 안 제148조의2제1항).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코올 남용 정도, 위험 애호, 정신적 건강 상태 등의 정밀 측정·분석 및 전문가의 운전면허 재취득 가능 여부 심사를 포함하는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 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2.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제8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받은 이후에 제79조의2에 따른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148조의2제1항 중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으로 한다.

제16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9조의2를 위반하여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9조의2, 제82조제4항 및 제3제148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9조의2(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반(자동차등 노면전차를 운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
	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
	코올 남용 정도, 위험 애호, 정
	신적 건강 상태 등의 정밀 측
	정·분석 및 전문가의 운전면허
	재취득 가능 여부 심사를 포함
	하는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
	이 있는 사람

~ ③ (생 략) <신 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벌칙) ①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 2.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노면전차를 운 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u>장치를 운전하는</u>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 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 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 서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 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9 조의2에 따른 알코올 치료 프 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위반(자동

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④ (생 략)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 설>

2. ~ 8. (생략)

② ~ ④ (생 략)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
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② ~ ④ (현행과 같음)
]160조(과태료)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제79조의2를 위반하여 알
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

지 아니한 사람

- 2. ~ 8.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